

대학 안팎의 ‘연구 노동’, 운동을 확장하는 ‘연구자 복지’

정혜진(대학원생노조)

전국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0%가 넘는 대학원생들이 자신을 ‘학생이자 노동자’로, 혹은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¹⁾ 연구·교육 자체가 대학원생들이 학회 간사, 프로젝트 연구원, 조교로서 수행하는 노동으로 구성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6년에 연구과제중심제도(Project Based System)가 도입되고 대학의 연구실이 R&D와 연동된 이래, 수많은 대학원생들의 연구는 이와 관련한 노동을 직접 수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대학은 연구와 노동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연구자들의 노동 현실을 엄폐하여, 연구자가 사회보장으로부터 배제되어야만 연구 및 장학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왔다.²⁾ 이때 사회보장으로부터의 배제는 노동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표지가 된다. 이렇게 연구자(특히 대학원생)는 연구·교육노동의 저임금 노동력으로 활용되면서 대학행정의 저임금 노동력으로도 동원되고,³⁾ 대학 밖의 저임금, 불안정노동과 접촉된다. 그럴수록 연구자는 연구가 노동과 더욱 분리되기를 바라고, 연구의 분절화·개별화로서의 성과주의에 침윤되기 쉬워진다. 연구는 실적으로 협소화된다. 학문 공동체의 문화와 제도의 변화를 위한 움직임은 연구자가 아닌 활동가의 몫으로 위탁된다.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연구노동권의 정당한 보장을 위해 싸워야 하는 이유다.

대학 밖은 해방적인 자급자족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연구자의 불안정한 삶과 노동이 지속되는 장소이다. 연구·교육노동의 저임금화는 대학 밖의 지식 시장과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도 반복된다. 대학 밖의 연구 단체는 대학과 협력해 대학 재정을 끌어오는 데서 생존 방안을 찾기도 한다. 대학 안에서만 연구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은 이미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당면한 현실이다. 대학 안과 밖을 아우르는 연구자의 운동은 이러한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연구자 권리선언」이 대학 바깥의 연구자들과 연구 노동까지 포괄하고 있는

1)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외, 『대학원생 연구환경실태 보고서』, 2014; 국가인권위원회, 『대학원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2015.

2) 대학원생노조의 투쟁의 결과로 2022년 1월 1일부터 학생연구원이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되었으며, 개정된 산재보험법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를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2019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사법은 강사에게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퇴직금, 방학 중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였고, 퇴직금과 방학 중 임금 지급의 전면화와 직장건강보험 보장을 위해 한국비정규교수노조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 주체들이 투쟁하고 있다.

3) 강태경, 「대학원생의 업무별 노동자성 연구」,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홈페이지, 2018, <http://3.34.189.117/contribution?mod=document&pageid=1&uid=30>; 조승환, 「대학원생은 학생이자 노동자, 계약의 경계 명확해야 ‘갑질’ 사라질 것」, 동아사이언스, 2019.01.28.

만큼, 이를 토대로 마련될 법안과 제도가 대학의 범주를 넘어, 대학에까지,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독립연구자들(및 초중고교 교사와 정책을 개발하는 활동가)의 노동 조건을 면밀히 다룰 필요가 있다.

한편 연구자 복지 정책의 방향성은 ‘예술인 복지법’을 참고하여 수립할 수 있다. 2012년에 제정된 이래 수차례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은, 법의 적용 대상 및 규모의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지적을 받아 왔다. 예술인 복지법의 지원 자격인 ‘예술활동증명’이 예술인 ‘인증’ 기능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 신진예술인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 법이 소외층에 대한 구제를 넘어 보편적 권리 보장의 차원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견해 등이 그것이다. 이는 예술이 국가의 공인하에 있게 되거나, 구체적 복지가 예술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저해하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인 만큼, 연구자의 복지 또한 연구 체제의 변혁과 운동의 확장이라는 방향성을 잃지 않으면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 연구자들이 학문 공동체에서 갖는 연구 경험과 전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은, 대학원 내 여성운동과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문 공동체를 여성주의적으로 조직하고자 하는 여성 연구자들의 노력은 동료 연구자들에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페미니즘 대중화와 함께 대학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었고 성평등한 대학을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많은 경우 이는 여성들만의 몫이 되어 왔다. 남성 연구자들의 위험부담을 기피하는 수동적인 자세와 침묵 속에서 소수의 여성 연구자들은 모든 갈등과 백래시를 감당하며 공동체에서 고립되곤 한다. 그 과정에서 여성 연구자들은 학문 공동체의 여성주의적 과제가 자원과 지지 없이 여성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느끼게 된다.

개별 대학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당사자 조직이자 네트워크로서의 노동조합과 연구자 단체가 대학 내 여성운동에 연대하는 것은, 당면 사건의 해결뿐 아니라 여성 연구자들의 고립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예술계의 경우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후인 2022년 9월에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와 ‘예술인 보호관’을 둬으로써 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사와 구제조치”⁴⁾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따라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상담과 예술인 자녀돌봄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자 권리선언」의 취지를 이행하는 후속 법안과 제도가 대학의 안과 밖에 성평등한 연구 환경을 만드는 실질적인 힘이 되기를 바란다.

4) 박경신, 「법적 측면에서 예술인 복지정책 10년과 미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0주년 기념 포럼 자료집, 2022, 22쪽.